

2026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

「건축사법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및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5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대한건축사협회 회장

<p>1. 응시원서 접수</p>	<p>【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함 】</p> <p>○ 기 간: 2026. 1. 7. (수) 09:00 ~ 1. 14. (수) 18:00까지</p> <p>○ 방 법: “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” 홈페이지(http://exam.kira.or.kr)에 접속하여 접수 ※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“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” 홈페이지에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</p> <p>○ 기 타: 응시수수료(125,000원)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인터넷 결제 처리비용)이 소요 1)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대한건축사협회 또는 각 시·도 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접수 가능 2) 「건축사법 시행규칙」 제10조에 따라 접수취소 및 반환 신청자, 응시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[붙임] 안내를 참조하여 접수 기간 내 신청 가능</p> <p>○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이 별도 시험실 배정 및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 지원을 희망할 경우 원서접수 시 장애 여부를 선택하여 접수한 후, 원서접수 기간 내에 “편의지원 제공 신청서”와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시·군·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)를 이메일(testkira@naver.com)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고 유선(02-3415-6871~5)으로 수신 여부 확인 ⇨ 세부 내용은 “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” 홈페이지 참조</p>			
<p>2. 응시자격</p>	<p>○ 건축사 자격시험</p> <p>(1) 「건축사법」 제13조에 해당하는 사람 가)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또는 4년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나)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(2) 「건축사법 시행령」 부칙 <제23821호> 제4조(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실무경력에 관한 특례)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○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</p> <p>(1) 「건축사법」 부칙 <제10756호>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(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) 건축에 관한 실무 경력을 쌓은 사람</p> <p>※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은 무효로 처리되며, 응시자격의 확인은 합격예정자가 추후 제출하는 서류에 의함</p>			
<p>3. 시험일자 및 장소</p>	<p>○ 시험일자: 2026. 3. 7. (토)</p> <p>○ 시험장소: 2026. 2. 13.(금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,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·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예정</p>			
<p>4. 과목, 배점 시험시간 출제범위 답안 작성방법 합격기준</p>	<p>교 시</p> <p>1교시</p> <p>시험과목: 대지계획</p> <p>배 점: 100점</p> <p>시험시간: 09:00 ~ 12:00 (3시간)</p> <p>출제범위: ○ 배치계획, 대지조닝, 대지분석, 대지 단면, 지형계획, 대지주차 : 6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 출제</p> <p>답안 작성방법: ○ 과제별로 A3 일반용지 답안지 1매에 자(삼각자 또는 막대자)를 이용하거나 프리핸드로 작성</p> <p>합격기준: ○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</p>	<p>2교시</p> <p>건축설계 1</p> <p>100점</p> <p>13:00 ~ 16:00 (3시간)</p> <p>○ 평면설계</p>	<p>3교시</p> <p>건축설계 2</p> <p>100점</p> <p>16:30 ~ 19:30 (3시간)</p> <p>○ 단면설계, 구조계획, 설비계획, 지붕설계, 계단설계 : 5과제 중 2과제 선택적 또는 복합적 출제</p>	
<p>5. 합격자 발표 및 제출서류</p>	<p>○ 합격예정자 발표: 2026. 4. 24.(금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, 대한건축사협회 및 시·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예정</p> <p>○ 합격예정자 서류 제출기간: 2026. 4. 28.(화) ~ 4. 30.(목) 18:00까지 ※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및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시 별도 공고</p> <p>○ 최종합격자 발표: 2026. 6. 17.(수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, 대한건축사협회 및 시·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예정</p>			
<p>6. 응시자 지침</p>	<p>○ 응시표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둘 다 지참 <모바일 신분증 사용불가> *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</p> <p>○ 제도용품: 최대 가로650mm × 세로450mm 이내 규격의 제도판 1개 (※ 규격 초과 제도판은 사용 불가) 흑색연필, 삼각자, 스케일자, 소형전자계산기 등 제도용품 (응시자가 임의로 제작한 유사용품은 사용 불가) * 중·고등학교 책상(가로60cm×세로40cm) 1개 위에 제도판을 올려놓고 시험 실시 (보조책상 1개 지급)</p>			
<p>7. 주의사항</p>	<p>○ 응시자는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, 시험시작 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음</p> <p>○ 응시표 미지참자는 시험시행 당일 시험장에 마련된 응시표 출력 장소에서 응시표를 제출력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 답안지, 답안작성 트레이싱지(교시마다 1인당 2매) 및 깔판용지(1인당 1매)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하며 개인이 준비한 용지, 별도의 책상, 제도대 등은 일절 시험실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.</p> <p>○ 시험실 내에는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, 공식적인 시험시간 관리는 시험시작 신호와 시험종료 신호로 이루어집니다.</p> <p>○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,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* 시험시간 중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 소지 및 무단 열람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처리함</p> <p>○ 공학용전자계산기는 시험실에서 초기화(RESET)한 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일반계산기 사용을 권장합니다.</p> <p>○ 응시원서 및 시험답안지의 기재 착오, 오기입,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</p> <p>○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「건축사법」 제15조의2(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)에 따라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,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.</p> <p>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(044-201-3776~7)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팀(02-3415-6871~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			

1. 반환 및 감면 근거: 「건축사법 시행규칙」 제10조

2. 응시수수료 반환

(1)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(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)

접수 취소일	반환요율	반환시기
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	100%	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반환
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	60%	접수 취소기간 종료 후 일괄 반환
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	50%	

(2)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

사유	반환요율	입증서류
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	100%	입·퇴원확인서
본인,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, 부모, 조부모·외조부모, 형제자매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		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치료·입원 또는 격리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		입원·격리 사실확인서
자연재난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		경찰서, 관공서 등의 확인서

가) 신청 기간: 시험일 이후 30일까지(신청기간 종료 후 반환 불가)

나) 제출 서류: 신청서 및 입증서류

다) 제출 방법: 대한건축사협회에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원본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(정부24 등) 발급 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(testkira@naver.com) 제출 가능

3. 응시수수료 감면

대상자	감면율	입증서류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	20%	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		한부모가족증명서
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	50%	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

가) 신청 기간: 원서접수 기간 내(신청기간 종료 후 감면 불가)

나) 제출 서류: 신청서 및 입증서류

다) 제출 방법: 대한건축사협회에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원본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(정부24 등) 발급 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(testkira@naver.com) 제출 가능

라) 감면 방법: 응시수수료 전액을 선납하면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일괄 반환 처리

※ 자세한 사항은 “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” 홈페이지 참조